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 2000년대 이래 산업재해율은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 2010년대 중반부터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승인 건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재해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0대 이상 남성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2020년에 사고로 사망한 882명의 약 절반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0대 이상 근로자였다.
-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사망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및 사업장 규모에서는 중고령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안전건강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2022년과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제도와 정책의 언어로 표현한 지 40여 년이 되었다.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되

었고, 1987년에는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이 설립되었다. 1987년 민주화의 분위기에서 문송면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운동을 겪으면서 산안법이 전부개정된 때가 1990년이다. 이때부터 약 30년간 유지된 법체계의 기본틀이 최근 크게 바뀌었다. 2018년에 산안법이 전부개정되었고, 2021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에 본격화된 고용관계 변화의 맥락에서 노동안전건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노광표, 2020; 남궁준 외, 2022)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글은 노동안전건강 의제에 대한 관점을 기술공학적·의학적 접근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커지는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와 구조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직후인 2001년부터 2022년을 관찰 기간으로 설정해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을 중심으

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4년 1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로 주요 현황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본다. 분석자료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을 주로 활용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추이

먼저 산업재해 발생률의 추이를 확인해 보자(그림 V-34).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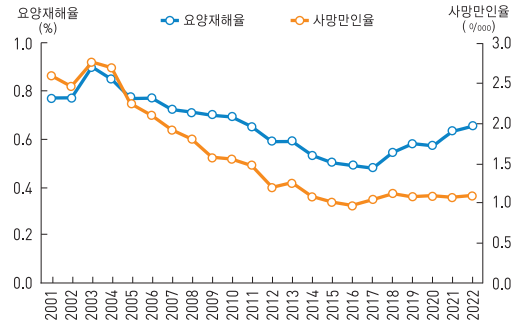
요양재해율은 2004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0년대 중반 정체 이후 약간 상승했다. 사망만인율은 감소세가 더 가파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질병사망자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고사망자 수 감소세는 완만하다.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V-35). 2000년대 초반 이래 한국의 사망사고재해 발생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한국의 수준은 미국과 함께 높다. 사망재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과 독일이고, 중간 수준인 국가는 호주와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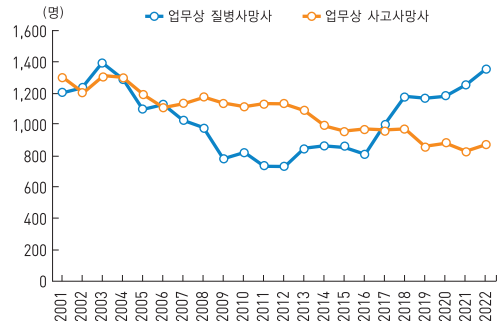
2) 산안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제2조)이다. 사업주는 "사망이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초래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통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받은 경우"가 집계된다.

[그림 V-34] 산업재해 발생률, 2001-2022

1) 요양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2) 업무상 질병 및 사고 사망자 수



주: 1)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

2) 사망만인율 = (업무상 사망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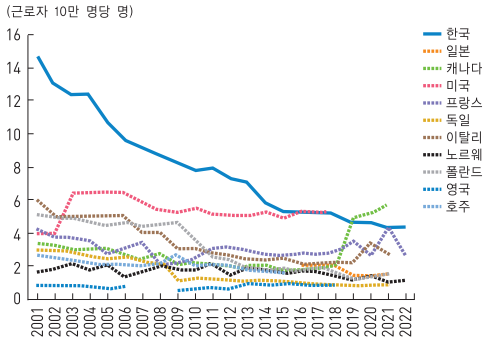
3)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업무상사고사망자와 사망만인율을 비교할 때에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 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에서 제외되었음(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한국 사회의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의 변화 추이를 산업재해 발생 수준의 감소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노동환경의 실질적 개선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1990년대에 나타난 가파른 감소세(이경용, 2010; 박두용, 2016)가 2000년대에 둔화되고 2010년대에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면, 노동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V-35] OECD 주요 국가의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2001-2022



주: 1) '치명적 산업재해'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한 산업 사고의 결과로, 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사망심만인율 등으로 측정함. 한국은 업무상사고 사망심만인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회원국)", 국가통계포털, 2023.10.

재해를 변화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분모가 되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의 변화다.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꾸준히 늘었다. 1982년 346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2000년에 949만 명으로, 2022년(6월)에 1,98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990년대의 산업 재해를 감소세는 분모의 크기 증가로 일정 정도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에도 비슷한 비율로 가입자가 증가했는데, 그에 비례해 산업재해율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산재 발생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발생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그림 V-34]에서 확인한 2010년대 중반의 변화 양상은 추가 해석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2011년 집계 방식 변화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로 유지되고 있던

사고사망자 수가 줄었고, 질병사망자 수는 늘어났다. 이것은 일정 수준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시기에 재해판단범위가 확대(고용노동부, 2022b: 417-421)되고 승인율이 높아졌다.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 요양재해를 및 질병사망자 증가 추이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업무상 질병 승인율 변화다. [그림 V-36-1]에서 업무상 질병 승인 신청 건수는 2000년대 중후반 8,000건대에서 2010년대 중후반 1만 건대로 늘어났다. 승인율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낮아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높아진다. 약 10년간 승인율이 하락·정체한 것은 2008년에 도입된 질병판정위원회 제도의 효과로 평가된다.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낮은 승인율로 나타나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했고³⁾ 정부가 이를 일부 반영해 2011년 11월, 2013년 7월, 2017년 9월 등에 걸쳐 위원회 구성과 질병 판단 기준 및 절차를 바꾸면서 2017년부터 인정률이 50%대 이상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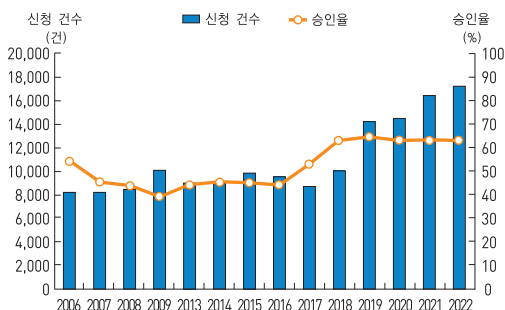
[그림 V-36-2]의 질병별 신청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뇌심혈관질환은 2010년대에 와서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노동시간 제도의 변화 및 그와 연동된 뇌심혈관질환 판정 기준 변화와 관련

3) 2010년 11월부터 노사가 참여한 '산재보험제도개선 T/F'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참여 확대, 판정위원 확대, 현장조사 강화, 질병명 변경 승인 절차보완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고용노동부, 2022b: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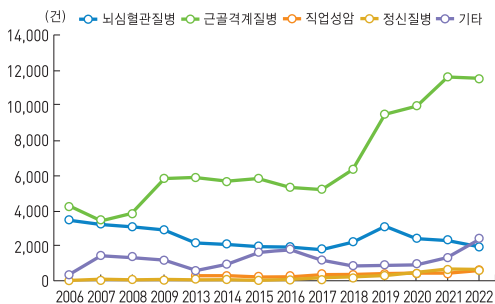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질환은 꾸준히 증가했다. 질병인정기준 완화와 함께 고령 근로자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직업성 암 범주는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한 2013년부터 등장한다. 정신질환은 2006년 83건에서 2017년 186건, 2022년 658건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했다. 기타 질환 신청 건수가 2020년부터 증가했는데 이는 보건의료계 종사자 등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청 건수

[그림 V-36] 질병별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및 승인율, 2006-2022

1) 전체 신청 건수 및 승인율



2) 질병별 신청 건수



주: 1) 승인율 = (승인 건수 ÷ 신청 건수) × 100.

2) '기타'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레이노증후군, 세균성질환, 간질환, 기타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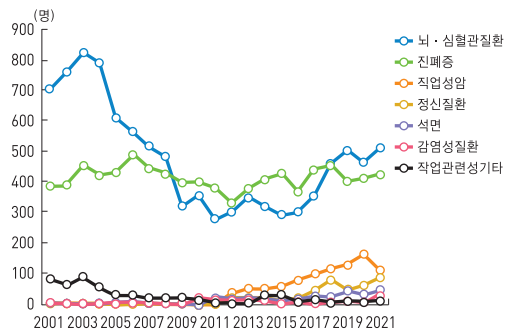
3) 2010~2012년은 자료 없음.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각 연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감염성 질환'으로 승인된 건수는 2019년 84건에서 2020년 240건, 2021년 630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재해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 변화 추이가 확인된다. [그림 V-37]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진폐증 사망자 수를 제외하고 보면,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변화 추이는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승인을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망재해자 수에서도 직업성암이나 정신질환의 비중이 2010년대에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37] 질병별 사망재해자 수, 2001-2021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산업재해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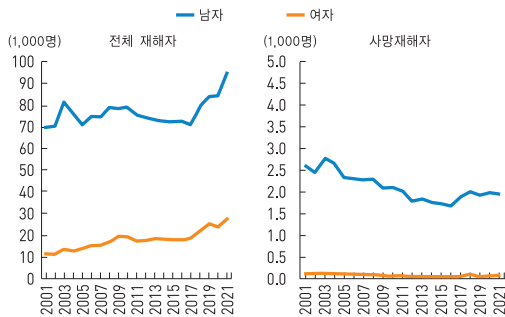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 287만 6,635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937만 8,565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12만 2,713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080명이고, 부상자가 10만 1,182명이며, 업무상 질병 요양자가



1만 9,183명이다(고용노동부, 2022a). 이하에서는 한 나라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사망재해자 수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V-38]에서 전체 재해자 중 여성은 2021년 22.7%이고, 사망자 중 여성은 4.6%이다. 여성의 재해자 비중은 2001년의 14.3%에서 점차 늘었으나 사망자 비중은 2001년의 4.8%와 거의 차이가 없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1.4%에서 2021년 43.0%로 근소하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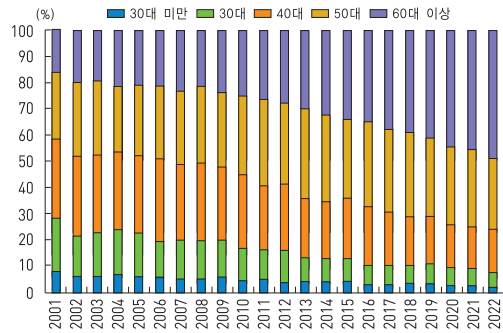
[그림 V-38] 성별 산업재해자 수, 2001~2021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사망재해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15~30% 내외로 연령대별 분포가 고른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40대 이하 비중은 작아지고 60대 이상 비중은 커지고 있다. 2022년에는 40대 미만이 7.7%, 40대 16.6%, 50대 26.8%, 60대 이상이 49.0%를 차지한다(그림 V-39).

[그림 V-39] 산업재해 사망자의 연령구성, 200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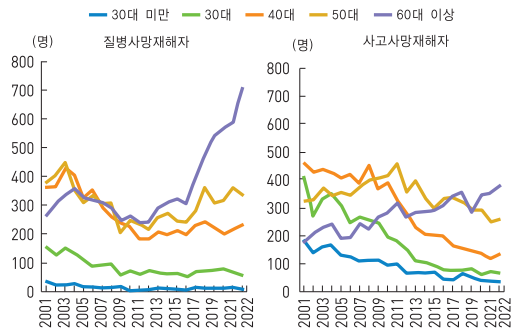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사망재해자를 질병사망재해자와 사고사망재해자로 구분해 보면,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 증가の特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40]에서 질병사망재해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3~2004년을 기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하나 2010년대 초반에 감소세가 멈춘다. 이 무렵부터 40대~50대 중장년층에서는 사망재해자 수가 늘어나며, 60대 이상에서는 급증한다. 반동의 한 요인은 앞서

[그림 V-40] 연령대별 질병사망 및 사고사망 재해자 수, 2001~2022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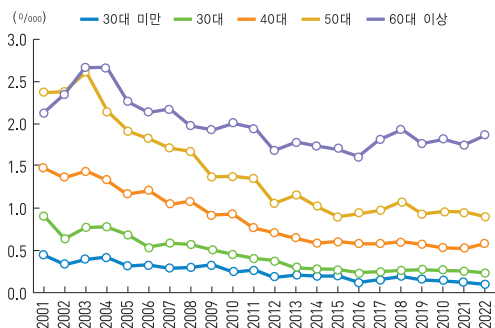
[그림 V-37]에서 확인했듯이 새로운 질병 범주 도입과 질병사망인정 기준의 완화이다.

질병사망재해보다 의미가 좀 더 분명한 사고 사망재해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래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재해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의 11.3%에서 2022년의 43.5%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제대로 읽으려면 노동인구의 연령구성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V-41]은 이를 고려하여 취업자를 분모로, 사망재해자를 분자로 계산한 연령대별 사망만인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전 연령대에서 사망만인율이 낮아졌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는 감소세가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사망만인율은 2010년대 이후 정체 추이, 또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60대 이상과 다른

[그림 V-41] 연령별 사망만인율(취업자 대비), 2001-2022



주: 1) 사망만인율 = (사망재해자 수 ÷ 취업자 수) × 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연령대의 격차가 최근에 와서 더 커졌다.

고령노동자는 대체로 단기 일자리에서 일한다. 즉 근속기간이 짧다. 근속기간별 사망재해자 수준을 보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 10년 이상인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다. 이것은 사망재해 발생 맥락의 특징을 드러낸다. 6개월 미만에서는 사고사망재해인 경우가 많고, 10년 이상에서는 질병사망재해인 경우가 많다. 질병재해의 경우 재해인정의 주요 요건이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이기 때문이다.

〈표 V-3〉은 연령대와 근속기간을 교차해 사고사망재해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6개월 미만 근속인 40대 이상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 이상이면서 6개월 미만 중 72.6%가 건설업에 종사했으며, 70.6%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47.1%는 20억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이들 중 46.0%는 떨어져서 사망했다.

한편 30대 이하이면서 근속기간이 짧은 이들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2020년에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94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의 10.7%를 차지한다(정연·이나경, 2022).⁴⁾ 이는 2001년의 4.2%에서 꾸준히 늘어난 것(남궁준 외, 2022: 147)으로, 외국

4) 산업재해 통계에서 늘 숨겨져 온 이들이 있다. 민간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이 아닌 별도 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과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이다. 2021년 기준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자는 90명이다. 농·어업인 및 근로자 사망자는 농업인이 232명, 어업인이 129명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2021년 사망자 수는 기존의 2,080명에서 2,531명으로 많아진다.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60%대 수준으로 높지 않아 숨겨진 사망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3%대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비중이다.

산업재해는 50대 이상 임시·일용직 남성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2020년에 사고로 사망한 882명의 47.2%(416명)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0대 이상 근로자였다. 이는 국가승인통계인 「근로환경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집단이기도 하다.

〈표 V-3〉 연령 및 근속기간별 사고사망재해자 분포, 2020

	6개월 미만	6개월-1년	1-3년	3-5년	5년 이상	합계
사고사망재해자 수(명)						
30대 미만	27	6	8	1	-	42
30대	33	5	16	5	5	64
40대	77	19	16	9	16	137
50대	179	25	29	18	41	292
60대 이상	237	24	40	16	30	347
합계	553	79	109	49	92	882
비율(%)						
30대 미만	3.1	0.7	0.9	0.1	-	4.8
30대	3.7	0.6	1.8	0.6	0.6	7.3
40대	8.7	2.2	1.8	1.0	1.8	15.5
50대	20.3	2.8	3.3	2.0	4.6	33.1
60대 이상	26.9	2.7	4.5	1.8	3.4	39.3
합계	62.7	9.0	12.4	5.6	10.4	100.0

주: 1) 비율은 전체 사고사망재해자 중 해당 연령대 및 근속기간 사고사망재해자의 비율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원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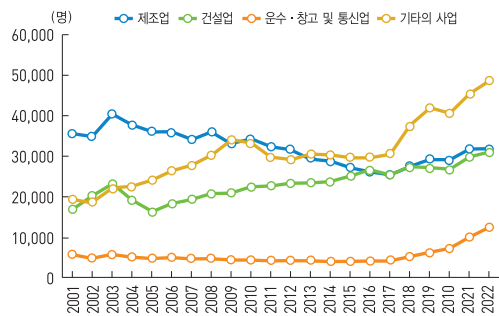
산업재해 취약부문

앞에서 확인한 취약 집단이 종사하는 노동환경은 사업장의 특징과도 연결되어 있다. 업종별로 요양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타

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순으로 재해자 비중이 크다. 최근으로 올수록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기타의 사업과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그림 V-42).

기타의 사업에서는 청소나 경비와 같은 시설관리서비스업이나 교육·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크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는 육상 및 수상으로 이루어지는 여객·화물운수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그림 V-42] 주요 산업별 요양재해자 수, 2001~2022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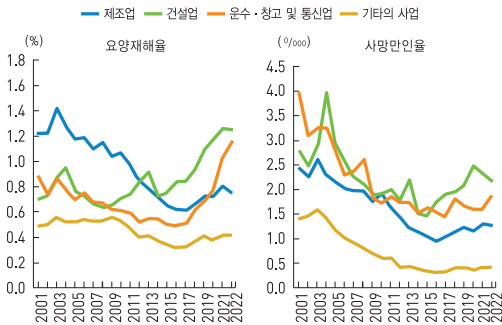
근로자 수 변화를 고려한 재해율을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자.⁵⁾ [그림 V-43]을 보면, 요양재해율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의 사업이 낮다. 사망만인율은 건설업과 운수·

5) 광업은 재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제외했다. 분자가 되는 재해자 수에 비해 분모가 되는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재해자의 상당수는 과거 석탄 채석업에 종사했던 이들로 진폐증을 앓고 있다.

창고 및 통신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이 중간 수준이며, 기타의 사업이 낮은 수준이다.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모두 2000년대 초반에 상승했다가 곧이어 일정 기간 감소한 후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한다. 요양재해율은 건설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2010년대부터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은 완만하게 감소하다 최근 증가추이를 보인다. 사망만인율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래 모든 산업에서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2010년대 중반에 오면 감소세가 멈추고 정체, 또는 증가 추이가 나타난다.

[그림 V-43] 주요 산업별 산업재해율, 200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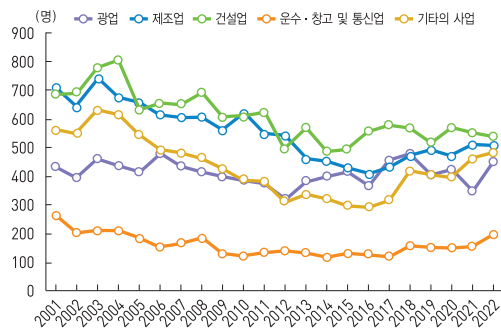
- 주: 1)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
 2) 사망만인율 = (업무상 사망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00.
 3)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업무상사고사망자와 사망만인율을 비교할 때에 주의가 필요함.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 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에서 제외되었음(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사망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광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순

으로 많다. [그림 V-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 대다수에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다가 2010년대에 오면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감소했다가 2015~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했다. 기타의 사업도 최근에 상승했다. 광업은 2012년을 기점으로 상승했다.

[그림 V-44] 산업별 사망재해자 수, 200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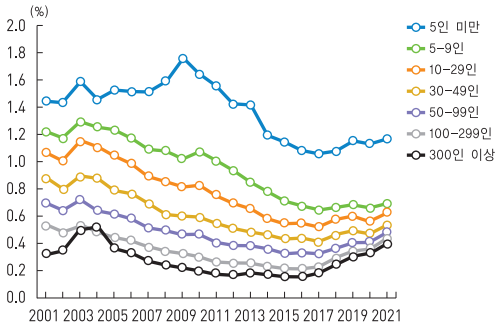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일차 요인은 사업체규모다. [그림 V-45]에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요양재해율이 낮은 것은 지난 20년간 변함이 없다. 변화 추이도 유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완만하게 감소하다, 201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규모별 변화 수준은 다소 다르다. 5인 이상 중규모 수준에서 재해율이 하락한 한편, 대규모 수준에서는 재해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규모별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좁혀졌다. 그러나 5인 미만에서는 감소세가 강하지 않았다. 그 결과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격차는 2000년대보다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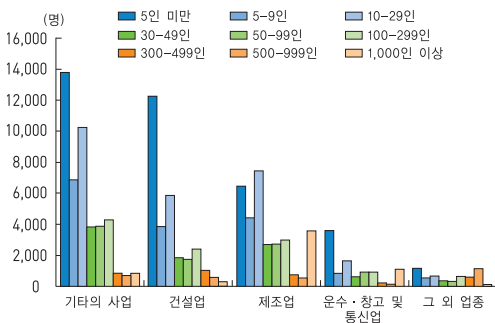
[그림 V-45] 사업체규모별 요양재해율, 2001~2021



주: 1)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산업과 사업체규모를 교차해서 보면, 산업재해 발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V-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재해 발생 규모가 큰 산업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10~29인 사업장이다.

[그림 V-46]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요양재해자 수, 2021



주: 1) '그 외 업종'에는 광업, 임업, 어업, 농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1.

한편 30인을 경계로 발생 수준이 한 차례 하락하고, 300인을 경계로 또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

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재해가 상당 수준 발생한다. 이것은 두 산업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속기간이 긴 노동자들의 질병 재해 발생(인정)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고사망재해자를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제조업이 1/4 정도를, 나머지가 1/4을 차지한다. 업종과 사업체규모를 교차했을 때 가장 비중이 큰 범주는 건설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여기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전체의 23.1%이다(표 V-4).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용관계에 따른 차이다. 2019~2021년에 발생한 중대재해⁶⁾ 현황을 원청과 하청으로 구별해 분석한 자료(남궁준 외, 2022: 31~37)에 따르면,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261건 가운데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786건(34.8%)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는 49.8%,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각 26.7%, 12.4%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하청 재해의 비중이 컸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하청관계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이 클수록 하청재해의 비중이 컸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위험을 외주화하는

6)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참고한다면 <표 V-4>에서 확인한 사고사망자 분포에서 건설업으로, 또 규모가 큰 사업체로 분류된 사망자에서 하청 근로자의 비중이 클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산업재해는 기타의 사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사고사망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약 37%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데 이들은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의 대규모 사업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V-4>에서 비중이 큰 범주는 중고령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남궁준 외, 2022). 외국인 노동자 비중도 큰 곳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 중 고령층과 이주노동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고용관계로 보면 원·하청 관계 및 특수고용형태와 플랫폼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노광표, 2020). 노동력 구성 및 고용관계의 변화 추이는 노동안전건강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표 V-4>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사고사망재해자 분포, 2021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그 외 업종	합계
사고사망재해자 수(명)						
5인 미만	191	42	38	28	19	318
5-9인	59	25	23	9	4	120
10-29인	78	46	32	16	5	177
30-49인	19	22	9	2	3	55
50-99인	19	17	10	8	-	54
100-299인	28	17	7	3	1	56
300인 이상	23	15	4	6	-	48
합계	417	184	123	72	32	828
비율(%)						
5인 미만	23.1	5.1	4.6	3.4	2.3	38.4
5-9인	7.1	3.0	2.8	1.1	0.5	14.5
10-29인	9.4	5.6	3.9	1.9	0.6	21.4
30-49인	2.3	2.7	1.1	0.2	0.4	6.6
50-99인	2.3	2.1	1.2	1.0	-	6.5
100-299인	3.4	2.1	0.8	0.4	0.1	6.8
300인 이상	2.8	1.8	0.5	0.7	-	5.8
합계	50.4	22.2	14.9	8.7	3.9	100.0

주: 1) 비율은 전체 사고사망재해자 중 해당 산업 및 사업체규모의 사고사망재해자의 비율임.

2) '그 외 업종'에는 광업, 임업, 어업, 농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변화

2018년에 산안법이 전부개정 되고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이래 산업재해 수준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면서 법제정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다. 1년이 갓 지난 현재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등 특수 요인의 영향력과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탐색 수준에서 2021년과 2022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사고사망재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산업재해 통계의



한계를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로 보면, 2022년의 사고사망자는 644명(611건)이었다. 이는 전년 683명 대비 39명(54건) 감소한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18명(25건)이, 제조업에서는 8명(6건)이, 기타 업종에서는 13명(23건)이 줄었다.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액 50억 미만, 이하 50억 미만)에서는 47명(50건)이 줄었고,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액 50억 이상, 이하 50억 이상)에서는 8명(4건 감소)이 늘었다(고용노동부, 2023a).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봐도 사고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전년의 147명(133건)에서 19명(9건)이 줄었다. 건설업에서는 6명(1건)이 줄었고, 제조업에서는 20명(16건)이 줄었다. 기타업종에서는 7명(8건)이 늘었다. 50인 미만(50억 미만)에서는 79명으로 같았고, 50인 이상(50억 이상)에서는 19명(8건)이 줄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의 발생 감소와 제조업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 둔화”를 한 요인으로 꼽았다(고용노동부, 2023b).

2022년에 발생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611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229건이며,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해 검찰에 송치한 건은 34건이다. 내사종결이 18건, 수(내)사 중이 177건이다(표 V-5).

검찰에 송치된 34건은 주로 제조업(16건)과 건설업(14건)에서 발생했다. 34건 중 절반은 300명

〈표 V-5〉 중대재해사건 수사 현황, 2022

(건,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적용 대상	송치	기소	내사 종결	수(내)사 중	사건 처리율
611	229	34	11	18	177	22.7

주: 1) 사건처리율 = (송치+내사종결) ÷ 발생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중대재해 현황」, 2023.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체이거나 공사규모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 2023a).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60~340명, 건설공사 72억 원~381억 원 규모의 법인 혹은 건설공사였다. 11건 중 10건은 사망사고재해로 다수는 하청근로자(8건)였고, 일용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되어 일한 외국인 노동자(1건)도 있었다(최정학, 2023).

2023년 6월 말 기준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으로 3건 모두 하청 근로자가 공사현장 또는 공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원청 대표에게 징역(1년~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효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 판단의 과정과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독립된 규율인 산안법이 1981년에 제정된 이래 한국사



회는 산업재해 발생 수준을 상당히 낮추어 왔지만 절대 수준에서는 여전히 주요 국가보다 높다. 특히 2000년대 이래 감소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일정 수준 하도급관계 및 특수고용관계의 확산과 같은 고용관계의 변화나 인구 고령화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같은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노동안전건강의 제에 대한 기존의 공학적·보건학적 접근의 한계와 사회(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근 30년 만에 산안법이 전부개정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대 이래 심화

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합적 대응을 상징한다. 이것은 중층적 고용관계에서 실질적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한편, 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제도의 변화가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향후 법제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아가는지, 또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제가 규범력을 발휘해 노동안전건강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일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2a. 「2021 산업재해현황분석」.
 ———. 2022b. 「고용노동백서(2022년판)」.
 ———. 2023a. “2022년 중대재해 현황: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1.19.)
 ———. 2023b.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5.15.)
 남궁준·박종식·김양호·박정선·정영훈. 2022. 「새로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노광표. 2020.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에 관한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개발원.
 박두용. 2016.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개발원.
 이경용. 2010. “산업재해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개발원.
 정연·이나경. 2022.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04:51-65.
 최정학.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법 집행에 대한 평가.”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1주년 심포지움 발표문(2023.2.14.)